제32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신뢰받는 투명한 시정, 시민과 동행하는 청렴특별시 조성

2025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5. 2.

감사위원회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 조 직 : 5담당관 25팀

(2025.1.31. 기준)

□ 인 력 : 137명 / 133명(정원/현원)

(2025.1.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 / 현원)							임기제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사무운영	
계	137/133	1/1	5/5	32/27	59/55	32/36	0/1	1/2	7/6
감사담당관	36/33	1/1	1/1	6/5	15/12	6/8	0/0	1/1	6/5
청렴담당관	22/23	0/0	1/1	6/5	7/7	8/9	0/1	0/0	0/0
공공감사담당관	21/20	0/0	1/1	5/4	8/10	7/5	0/0	0/0	0/0
안전감사담당관	29/29	0/0	1/1	6/6	14/15	8/7	0/0	0/0	0/0
조사담당관	29/28	0/0	1/1	9/7	15/11	3/7	0/0	0/1	1/1

※ 정원 외 인력현황 : 안전감사담당관〔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2명〕

주요업무

감 사 담 당 관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등 지원 ◆ 감사종합계획 수립 · 조정 및 감사 실시 ◆ 시비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 감사 ◆ 공직기강 확립(소극행정 엄단, 소통 · 공감 · 협업 · 예방 공직문화 확립)
청 렴 담 당 관	◆ 부패방지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운영 ◆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운영 총괄 ◆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운영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심사
공공감사담당관	◆ 투자 · 출연기관 기관운영 감사 ◆ 투자 · 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 투자 ·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 서울시 일상감사 및 투자 · 출연기관 일상감사 점검
안전감사담당관	◆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 · 조정 ◆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 사항 감사 ◆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하도급호민관제 운영
조 사 담 당 관	◆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 · 처리 ◆ 공익제보센터 운영 및 조사 · 처리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 · 처리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감사 및 조사 대상

○ **대상기관 : 총 807개 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 본청 · 소속기관(117), 시금고(1), 법정 시비 보조단체(13), 투자·출연기관(22), 민간위탁사무(329),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275)

2025년도 예산

☐ 세입 예산 : 총 1,080천원

(2025.1.31. 기준, 단위:천원)

구 분		'24년 예산 (최종)	'25년 예산	증 감	%
계		1,558	1,080	△478	△30.7
임시적세외수입		1,558	1,080	△478	△30.7
	보조금반환수입	905	532	△373	△41.2
	기타수입	653	548	△105	△16.1

☐ 세출 예산 : 총 1,653,13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 (최종)	'25년 예산	증 감	%
계	1,698,428	1,653,134	△45,294	△2.7
행정운영경비	499,213	557,961	58,748	11.8
사업예산	1,199,215	1,095,173	△104,042	△8.7

○ 세부 현황

(2025.1.31. 기준, 단위:천원)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	최종예산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감 사 위 원 회	1,617,109	1,698,428	1,653,134	△45,294	△2.7
감 사 담 당 관	681,054	665,116	741,861	76,745	11.5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3,000	13,000	20,500	7,500	57.7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07,354	307,354	353,867	46,513	15.1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9,649	39,649	33,954	△5,695	△14.4
기본경비	321,051	305,113	333,540	28,427	9.3
청 렴 담 당 관	213,300	313,647	262,294	△51,353	△16.4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25,400	210,320	99,860	△110,460	△52.5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9,200	49,200	50,000	800	1.6
적극행정 활성화	-	-	35,200	35,200	10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38,700	38,700	36,600	△2,100	△5.4
기본경비	-	15,427	40,634	25,207	163.4
공 공 감 사 담 당 관	100,694	100,694	99,828	△866	△0.9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62,700	62,700	60,300	△2,400	△3.8
기본경비	37,994	37,994	39,528	1,534	4.0
안 전 감 사 담 당 관	182,483	182,483	155,022	△27,461	△15.0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39,940	39,940	29,540	△10,400	△26.0
안전감사 활동 강화	90,510	90,510	72,000	△18,510	△20.5
기본경비	52,033	52,033	53,482	1,449	2.8
조 사 담 당 관	439,578	436,488	394,129	△42,359	△9.7
사전예방적 반부패 조사(점검) 수행	60,240	60,240	53,520	△6,720	△11.2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2,350	242,350	201,900	△40,450	△16.7
기강감찰 운영	45,252	45,252	47,932	2,680	5.9
기본경비	91,736	88,646	90,777	2,131	2.4

Ⅱ 정책목표

비전 시민과 동행하는 청렴 · 매력특별시 조성

목표

- 신뢰받는 서울 구현
- 시민 만족도 제고
- 안전한 서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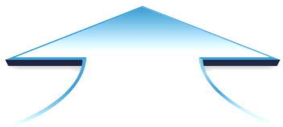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시민 생활개선 중점 감사	선제적 위험 예방 감사
• 소통과 공감, 협업을 통한 '청렴특별시 서울' 추진	• 시정 성과지원 및 시민편익 제고 감사	• 재난취약분야 및 시민 밀접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반부패 · 비위 사전 예방으로 청렴도 향상	• 적극행정 확산 · 정착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	•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체불 예방
	• 투자 · 출연기관 성과 제고, 역량 강화 지원	

Ⅲ 주요 추진사업

1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서울 구현 7

1-1 소통과 공감, 협업을 통한 '청렴특별시 서울' 추진 8

1-2 반부패 · 비위 사전 예방으로 청렴도 향상 9

2 시민 생활개선 중점 감사로 시정 만족도 제고 10

2-1 시정 주요사업 성과 및 시민편익 제고 감사 11

2-2 적극행정 확산 · 정착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 12

2-3 투자·출연기관 성과 제고, 역량 강화 지원 13

3 선제적 위험 예방 감사로 안전한 서울 조성 14

3-1 재난취약분야 및 시민 밀접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15

3-2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체불 예방 16

1.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서울 구현

1-1 소통과 공감, 협업을 통한 '청렴특별시 서울' 추진

1-2 반부패 · 비위 사전 예방으로 청렴도 향상

1.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서울 구현

1-1 소통과 공감, 협업을 통한 '청렴특별시 서울' 추진

◈ 직원과 시민이 소통·공감하는 新청렴 문화 확산에 기반한 청렴정책 추진
◈ 협업을 통한 예방적 반부패 활동으로 청렴을 선도하는 도시 구현

□ 소통·공감형 新청렴 문화 확산으로 청렴도 2연속 1등급 추진

○ '뻔'하지 않은 '펀(FUN)'한 新청렴 DNA 정착으로 청렴체감도 강화

– 소극행정·불공정 예방, 배려와 존중까지 확장된 개념의 유연한 청렴인식 정립

– 청렴 아이디어, 굿즈, 新청렴 영상 등 자율 참여형 청렴 콘텐츠 개발·활용

○ 시민 수요에 중점을 둔 불합리한 규제철폐, 민원불편 개선의 청렴정책 추진

– 청렴해피콜, 알림문자 등을 활용한 불합리한 민생 규제 확인 및 개선

※ 청렴 해피콜 인원 확대('24. 4천명→'25. 6천명), 청렴 알림문자 발송('25.1~)

– 공직자 비리·갑질 신고(공익제보) 홍보로 시민 불편사항 청취 및 해소

□ 협업을 통한 예방적 대응으로 청렴 사각지대 해소

○ 부패취약요인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선제적 대응 추진

– 부패경험, 민원사례 등 집중관리 대상 기관 선정 및 부패 위험 사전 차단

– 실·국별 위험요소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략적 반부패 추진

※ 자체 설문조사(5월) → 취약 분야 분석·대안 마련(6월) → 대응 관리(7~8월)

○ 현장 중심 취약 분야 기획점검 강화 (공사 현장, 사업소·센터 등)

– 감사위원회 전부서의 역량을 결집하여 취약 분야 예방적 점검·감찰 실시 (분기별)

– 오피스빌런, 업무태만 등에 대한 복무감찰 및 엄정조치로 기강확립 (상시)

작 성 자	청렴담당관: 유형석☎ 2133-3155 청렴정책팀장: 김태희 ☎3175 담당: 이정진 ☎3176

1-2 반부패 · 비위 사전 예방으로 청렴도 향상

◈ 부패·비위 유형 및 시기별 진단을 통한 사전 예방적 조사·점검 활동으로 청렴도 향상 도모

□ 각종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조사 · 점검 강화

○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분야·기관 대상 예방활동 추진(상시)

– 취약기관(사업소 등) 예방 캠페인 및 소통 · 협업으로 자체 예방활동 지원

– 조직문화 저해요인(행위자) 복무감찰 및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사전예방

○ 소극행정, 갑질행위 등 시민 불편(부조리) 특별점검 추진(상·하반기)

– 보조사업, 민간위탁, 용역 등 현장점검으로 청렴도 저해요인 개선

– 각종 시민 이용시설, 민원분야 대상 소극행정 및 갑질행위 의견청취 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사역량 강화

– 괴롭힘 조사 전문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등 이수

– 신고자 성별·나이에 따라 조사자의 연령, 직급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배정

□ 부서간 소통 · 협력을 통한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

○ 각종 직무교육과 협업(연계)하여 내실있는 교육·홍보 추진

– 찾아가는 청렴교육, 보조사업 · 민간위탁 교육 등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 부패·비위 행위 선제적 대응으로 자율적 비위예방 지원

– 월별(분기별) 발생빈도가 높은 비위 · 범죄 유형 등 사전 전파로 경각심 고취

□ 시스템 개선 및 홍보 활성화로 공익제보 적극 유도

○ 복잡한 신고 창구를 통합하여 제보자 혼란 및 불편 해소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市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등 SNS, 인터넷 플랫폼 활용 신규홍보 적극 추진

작 성 자	조사담당관: 김정안 ☎ 2133-3080	조사1팀장: 박해진 ☎ 3082 담당: 유영진 ☎ 3084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3180 담당: 황수영 ☎ 3181

2. 시민 생활개선 중점 감사로 시정 만족도 제고

2-1 시정 주요사업 성과 및 시민편익 제고 감사

2-2 적극행정 확산·정착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

2-3 투자·출연기관 성과 제고, 역량 강화 지원

2. 시민 생활개선 중점 감사로 시정 만족도 제고

2-1 시정 주요사업 성과 및 시민편익 제고 감사

◈ 시 주요사업, 민생·경제 분야 등에 대한 감사로 시정 성과 제고
◈ 시민 밀접시설 감사로 시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

□ 시 주요사업 및 민생·경제 분야 등에 대한 성과감사 추진

○ 시 주요사업 추진시 예산 효율적 사용 및 사업 성과 점검

– (수변감성)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재배정) 운영실태 감사(물순환안전국 등)

– (정원도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재배정) 등 운영실태 감사(정원도시국 등)

○ 민생·경제 분야 중 보조·민간위탁사업 등 취약분야 적정성 확인

– 민간위탁금 관리 점검 등을 위한 동작·용산 노인복지시설(재배정) 운영실태 감사

– 취약분야(보조사업) 점검 위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실태 감사(경제실 등)

※ '24년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27개소, 예산 411억원

□ 시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민 밀접시설 감사 추진

○ 의료 분야·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으로 개선사항 도출

– **시립병원 공공보건의료체계** 관리·운영실태(시민건강국, 은평·어린이·서북병원)

– 사용수익허가 적정성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재무국, SH공사 등)

○ 시민 접점시설(기관) 등에 대한 감사로 시민 불편사항 개선

– **도로사업소**(성동·강서),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운영 감사 추진

– **농업기술센터** 기관운영 감사로 농업기술 교육, 치유·도시농업 사업 등 점검

○ 공익감사단 등 활용 확대를 통한 자체 감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 감사참여 경력을 고려한 배정 등 참여율 제고

※ 공익감사단(165명), 안전감사옴부즈만(20명), 명예하도급호민관(16명) 운영

작 성 자	감사담당관: 김윤하 ☎ 2133-3010 감사총괄팀장: 김남욱 ☎ 3012 담당: 김혜송 ☎ 3019

2-2 적극행정 확산·정착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시민 공공 서비스 질 제고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 불합리한 경제규제 철폐 안건에 대한 '사전컨설팅 집중검토'로 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간) 통상 50일 → **30일 이내** ※ '25년 1분기 내 집중접수 및 처리

※ 공익감사단, 명예하도급 호민관 등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하여 안건검토 지원

– (안건처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최우선 처리**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 시범운영 실적('24년) : 특별휴가(1일) 부여(총 48명)

* 적극행정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일정한 마일리지 부여·적립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 (적립 기준) 평가 항목 및 항목별 적립 점수 확대 추진 ※ 현행 8개 항목 2점 이내

– (보상 다양화) 특별휴가(1일) → 연수원 우선배정권, 당직면제 등 다양한 보상 방안 검토

〈 **적극행정 주요 우수사례(2024)** 〉

✔ **기후동행카드**(교통정책과, 상반기 최우수) ► **국무총리상**(최우수상)
·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신규 도입

✔ **도시가스 연결 재료비 인하**(녹색에너지과, 하반기 최우수)
· 도시가스 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의 이사비용 절감

✔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운영**(영유아담당관, 상반기 우수) ► **행안부장관상**(우수상) ※전국 확대 시행
·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양육자의 부담 경감

< (참고) 최근 3년간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황('22년~'24년) >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24년	2023년	2022년
계		**80**	**27**	**26**	**27**
상반기		21	7	7	7
	시	21	7	7	7
	자치구	–	–	–	–
하반기		59	20	19	20
	시	21	7	7	7
	자치구	21	7	7	7
	공공기관	17	6	5	6

※ 포상금 지급 기준: 최우수상 1,200천원, 우수상 600천원, 장려상 300천원

작 성 자 | 청렴담당관: 유형석☎ 2133-3155 적극행정팀장: 이후영 ☎3185 담당: 박귀상, 유혜리 ☎3187,3186

2-3 투자출연기관 성과 제고, 역량 강화 지원

◈ 투출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성과 제고 지원
◈ 투출기관 자체 감사역량 강화 방안 마련, 사고·비위행위 사전 예방

□ 2025년 정기 및 수시 감사 추진

ㅇ 시민생활 밀접분야, 미래 선도사업 정기 종합감사 추진

– 먹거리 · 교통 · 환경 · 교육 등 시민생활 밀접분야

※ 농수산식품공사(먹거리), 교통공사(교통), 물재생시설공단(환경), 평생교육진흥원·50플러스재단(교육)

– 문화 · 디자인 · 디지털 등 미래 선도 분야

※ 문화재단(문화도시 서울), 디자인재단(디자인서울 2.0), 디지털재단(스마트시티)

ㅇ 주요 현안, 사건·사고 예방위한 수시·특별 점검 실시

– 채용실태, 공직기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 점검, 고질적 비위 근절

· 권익위와 협업, 투출기관 채용실태 및 음주운전 실태 점검 기강확립(2~11월 중)

· 언론비판, 각종 민원 발생시 투출기관에 신속한 피드백 지원 위한 점검(2~12월 중)

– 투출기관 대시민 규제업무 중 규제철폐가 필요한 업무 점검

· 투출기관 협조하에 대시민 규제 전수 조사 · 점검 실시(2~5월 중)

· 22개 투출기관,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해당 실 · 국과 협업추진

□ 투출기관 자체 자정능력 강화 지원

ㅇ 투출기관 '일반관리분야 자체점검' 개선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 지원

– 투출기관 감사인력, 감사역량 등을 고려, 기관별 차별화된 지원방안 시행

※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기관별 A(우수), B(보통), C(미흡) 등급으로 구분, 보통·미흡 기관에 대해 1차 재점검토록 조치, 2차 공공감사담당관에서 직접점검 실시

ㅇ 투출기관의 실질적 자체 감사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감사 우수사례와 지적사례 공유, 감사협의회를 통한 반부패 청렴시책 공유

– 투출기관 평가지표 개선(감사활동에 배점을 높임)으로 실질적 감사역량 제고 유인

작 성 자	공공감사담당관: 유정태 ☎ 2133-1570 공공감사1팀장: 김현호 ☎ 1571 담당: 유지현 ☎ 1573

3. 선제적 위험 예방 감사로 안전한 서울 조성

3-1 재난취약분야 및 시민 밀접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3-2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체불 예방

3. 선제적 위험 예방 감사로 안전한 서울 조성

3-1 재난취약분야 및 시민 밀접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현장중심 선제적 예방 감사를 통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민밀접 시설에 대한 위해·위험 요인 차단

□ 재난취약 분야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사 공고화

○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 신종재난, 재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감사 추진

- (중대재해) 안전한 서울을 위한 부실공사 예방대책(6월)
- (신종재난)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및 안전관리 실태(8월)
- (피난약자) 시립병원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9월)

〈 공사장 〉

〈 전기차 화재 〉

〈 의료시설 〉

□ 시민생활 속 안전취약분야 및 시민불편 예방 감사 추진

○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매시장, 도시기반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중점감사 추진

- (시민밀접) 농수산식품공사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3월)
- (시민불편) 하수시설(4월) 및 하수처리 안전관리 실태(9월)
- (기동점검) 키즈카페 등 시민 이용시설 및 자연재난 대비 실태(수시)

〈 도매시장 〉

〈 하수 처리시설 〉

〈 키즈카페 〉

○ 공무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시민 안전사고 상시예방

- 안전순찰 앱을 통한 안전위해요인, 법령개정 필요사항 등 접수·처리(상시)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 2133-3050 안전감사1팀장: 박종원 ☎ 3052 담당: 이병철 ☎ 3053

3-2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체불 예방

◈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하도급 관리 역량 제고와 신고센터 홍보를 통한 약자 권익보호

□ 불법·불공정 사각지대 특별관리를 통한 예방적 감사 강화

○ 하도급 감사 대상분야 확대를 통해 하도급 부조리 사각지대 해소

– (기존) 건설·소방 분야 ⇨ (개선) 전기·통신·문화재 분야 감사 확대

□ 하도급 업무관계자 교육 강화를 통한 불법하도급 사전예방

○ 「찾아가는 하도급 교육」 대상 대폭 확대와 센터 담당자 교육 신규추진

– (기존) '24년도 10회 333명 → (개선) '25년도 20회 600명(목표)

기 존		개 선('25년도)
• 발주기관 신청에 의한 수시교육 • 정기 하도급 실태감사 시 대상기관 교육	⇨	• 市(건설혁신담당관) 점검 결과에 따른 교육 (신규) • 하도급 부조리센터(32개) 담당자 교육 (신규)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 장비임대업자 대상 추가문자 발송 및 현수막게첨 이행확인 절차 추가

기 존		개 선('25년도)
• 장비임대업자 대상 문자 발송 • 민간현장 센터 홍보 현수막 게시	⇨	• 장비임대업자 대상 문자 발송(연 1회 → 연 2회) • 민간현장 현수막 게첨 준수여부 이행 확인

□ 명예하도급 호민관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감사 공정성 확보

○ 연임제한 규정(6년 이내) 신설, 품위손상 등 해촉사유 추가 등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 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 조성건 ☎ 3070 담당: 안성일 ☎ 3071

붙임1

2025년 월별 감사계획

☐ 총 10개 분야 (종합감사 3, 특정감사 7)

(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대상기관	감사팀
1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감사 1·2·3팀
2월 ~ 5월	특정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 (재배정) 등 운영실태	정원도시국(정원도시정책과, 공원조성과,조경과), 재배정사업 관련 자치구	감사1팀
	특정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재배정) 운영실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재배정사업 관련 자치구	감사2팀
	특정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실태	경제실(대학협력과), 사업참여 대학 및 자치구	감사3팀
6월 ~ 9월	종합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운영	서울역사박물관	감사1팀
	종합	도로사업소 기관운영	성동·강서 도로사업소	감사2팀
	특정	노인복지시설(재배정) 운영실태	복지실(어르신복지과) 동작구, 용산구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종합노인복지관	감사3팀
10월 ~ 11월	특정	시립병원 공공보건 의료체계 관리 운영실태	시민건강국(공공의료과) 어린이·은평·서북병원	감사1팀
	특정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재무국(재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리부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	감사2팀
	종합	농업기술센터 기관운영	농업기술센터	감사3팀

☐ 총 12개 분야 (종합감사 8, 특정감사 4)

(공공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대상기관	감사팀
1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감사지적사항 미이행 기관	공공감사 1·2·3팀
2월 ~ 4월	종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민생노동국	공공감사1팀
	종합	서울문화재단 기관운영	서울문화재단, 문화본부	공공감사2팀
	종합	서울디지털재단 기관운영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도시국	공공감사3팀
5월 ~ 8월	특정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	투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감사1팀
	종합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기관운영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공공감사2팀
	종합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운영	서울시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국	공공감사3팀
	특정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일상감사팀
9월 ~ 11월	특정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실태	미의뢰 사업부서 (본청 및 사업소)	일상감사팀
	종합	서울교통공사 기관운영	서울교통공사, 교통실	공공감사1팀
	종합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운영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관	공공감사2팀
	종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관운영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순환안전국	공공감사3팀

☐ 총 11개 분야 (특정감사 11)

(안전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안전감사 1·2·3·4팀
	특정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특별점검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3월 ~ 5월	특정	하수악취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안전관리실태	영등포구, 송파구, 종로구	안전감사3팀
	특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감사4팀
	특정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6월 ~ 8월	특정	안전한 서울을 위한 부실공사 예방 대책 감사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감사2팀
9월 ~ 11월	특정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기후환경본부, 교통실, 소방재난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1팀
	특정	물순환 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 안전관리 실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안전감사3팀
	특정	시립병원 안전관리실태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단) 서북병원, 은평병원	안전감사4팀
	특정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특별점검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특정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공사분야 하도급 관리실태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수시	특정	각종 긴급 점검 및 사고조사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안전감사1팀

붙임2

202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7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7	32	5	-	-
	시정·처리요구사항	13	10	3	-	-
	건 의 사 항	14	12	2	-	-
	기타(자료제출 등)	10	10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정밀 감사 요구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조사대상: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ㅇ 조사기간: ’24.11.27(수) ~ 12.18.(수) ㅇ 조사내용: 평생교육진흥원 공무용 차량 운영 · 관리 실태 (대상기간 : ’21.9 ~ ’24.9.) ㅇ 조사결과: 업무용차량 배차신청·승인 및 출장명령 등 절차 미준수, 운행일지 작성 부적정 등 관리소홀 확인 ㅇ 조치사항: 차량 관리 소홀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교육 및 개선방안 마련토록 평생교육진흥원 통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21년도 감사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적시에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소관부처 지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처리할 것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감사위원회는 서울물재생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2021.11.11. 공단으로 통보하였음 ㅇ 본 사안은 계약업체가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타사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그 소관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로 위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처분하였음 ㅇ 이에 따라 공단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중소기업중앙회(현 소관 : 중소기업유통센터)에 2022.1.10. 직접생산 위반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2년간 업무를 지연하다가 소관부처가 아님을 통보(2024.1.10.)하여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첩(2024.1.23.)하는 과정에서 처분이 지연됨 **□ 향후계획** ㅇ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처분 시 처분요구 사항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이행실태 감사 등을 통해 감사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table>
<tr><th>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th><th>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ㅇ 조사담당관 업무보고 자료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와 관련된 담당 인력 및 수행 체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업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 향후 업무보고에 전담 인력과 구체적인 수행 체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할 것
(조사담당관)</td><td>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조사인력 : 20명(조사1~4팀 조사담당자), (2025.1.20.기준)
ㅇ 처리절차
<table>
<tr><th>구분</th><th>주 요 내 용</th><th>처리부서</th></tr>
<tr><td>① 신고 접수, 상담</td><td>·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조사의뢰
· 신고인·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td><td>인사과, 노동정책과</td></tr>
<tr><td>② 조사</td><td>· 관련 부서장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 조치
· 피신고인 및 참고인 등 조사 자료요구 등
※ 조사 세부절차 : ① 조사계획 수립 ② 조사실시 통보 ③ 조사수행[피해자 우선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제3자가 신고인인 사건의 경우 신고인 선(先)조사 가능(* 신고인 → 피해자 → 참고인 → 피신고인 순)] ④ 조사결과보고 ⑤ 감사위원회 부의</td><td>조사담당관</td></tr>
<tr><td>③ 결정</td><td>·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내부종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요구 등 조치
※ 징계의결 요구시 외부전문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td><td>조사담당관</td></tr>
<tr><td>④ 통보</td><td>· 신고인,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각 당사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조사담당관 → 인사과 또는 노동정책담당관 → 신고인, 피해자
· 조사담당관 → 행위자(신분·행정상 조치사항)</td><td>조사담당관, 인사과, 노동정책과</td></tr>
<tr><td>⑤ 사후 조치</td><td>·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행정처분, 피해자와 분리배치 등)
·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피해 회복 조치
· 행위자 및 관계인 교육이수, 조직문화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등 마련</td><td>인사과, 노동정책과, 발생기관, 관련부서</td></tr>
</table>
□ 향후계획
ㅇ 25년도부터 업무보고시 반영
</td></tr>
</table>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올해부터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전략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 분야를, 투출기관은 일반관리 분야(인사・예산・복무 등)를 자체 감사하고 있음. 이러한 방침이 시 감사위원회의 역할 축소로 비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투출기관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투출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 **(공공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ㅇ 2024년 투출기관별 일반관리분야 자체점검 실적 확인중 - 기관별 자체점검 건수, 지적내용 및 조치의 적정성, 타 투출기관 점검결과와 형평성 등 중점 확인 **□ 향후계획** ㅇ 자체점검 결과 확인·분석 후 투출기관 일반관리분야 자체점검 자정능력 향상계획 수립·시행 : 2025. 2.중 - 자체점검 실적을 바탕으로 기관 등급 구분(우수, 보통, 미흡) - 등급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감사인력 지원, 교육 등) - 투출기관 일반관리분야 감사사례집 현행화 병행 ㅇ 2025년 투출기관 일반관리분야 자체점검 실시 : 2025. 3.~
ㅇ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과도한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제출 전에 위원장이 철저히 확인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자료 제출 전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검증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명예하도급호민관은 공개채용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임기 기간과 지원자격도 별다른 이유없이 변경되어 4명은 9년째 연임하고 있는 등 위촉절차가 불투명한 문제 시정할 것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개선계획 수립** ㅇ 명예하도급 호민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24. 12. 3.) - 연임 규정 명문화(연임횟수 최대 2회로 제한) - 해촉 규정 보완(품위손상,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 ㅇ 2025년 제6기 명예하도급 호민관 위촉 계획 수립('24. 12. 30.) - 연임횟수 2회 초과 및 재위촉 미동의 : 해촉(10명) - 관련 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기술사회 등) 추천 요청 □ **향후계획** ㅇ 위촉 절차를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음
ㅇ 행감자료 제출시 개인정보를 담아 제출한 바 개인정보 유출에 엄중하게 조치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개선계획 수립** ㅇ 명예하도급 호민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24. 12. 3.) - 개인정보 비공개 여부 3단계(담당-팀장-과장) 검증 확행 □ **향후계획** ㅇ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나 외부로 자료공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사례의 부재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줌. 공익제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필요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서울시는 21~22년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완 개정된 제보자 책임감면제도를 2022년 말 서울시 공익제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 ㅇ 또한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2014)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와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ㅇ 제보자 보호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시행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반영하고 보호 제도와 관련해 권익위와 지속 협의를 실시하여 공익제보자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공익감사단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음.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감사가 아닌 점검에 치중되어 있음. 외부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감(조)사분야 분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예산에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수감 시 법률 자문 지원 예산 12,000천원을 증액 편성 ㅇ '25. 5월 재위촉 예정인바, 분야별 수요 및 개인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 예정임 ㅇ 공익감사단 요청 접수 시 미참여 공익감사단 우선 지원을 통해 참여율 제고 도모 **□ 향후계획** ㅇ 외부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낮은 공익제보 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져야 함. 해외의 경우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례를 검토하여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임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ㅇ 서울시는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2014)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ㅇ '21~22년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완 개정된 제보자 책임감면제도를 2022년 말 서울시 공익제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 ㅇ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보자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성 있는 보호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음. ※ 권익위의 보호조치 권한 : 원상회복, 차별지급 된 보수등의 지급, 그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 ㅇ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조례 개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조례개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적용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안심변호사 정원 10명 중 현재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조속히 충원이 필요하고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 상담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시민 상담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 필요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공석인 안심변호사의 조속한 충원을 위해 '25. 1. 7.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안심변호사 추천을 의뢰하여 위촉 절차를 추진중임. ㅇ 안심변호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상담내용의 비밀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닌, 응답소 공익제보 접수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변호사별 이메일을 통해 1:1상담이 진행되고 있음. ㅇ 또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안심변호사에게 신속한 상담회신이 이뤄지도록 요청하고 있음. **□ 향후계획** ㅇ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심변호사 소통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서울시 공익제보 처리 과정에서 안건을 타 기관이나 자치구로 이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사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처리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함. 현행 공익제보 처리 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공익제보가 접수되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안을 분석하여 조사 권한을 가진 부서 또는 기관에 “이첩의견” 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있음. ㅇ 제보 이첩시 “이첩의견” 에는 제보내용 요약, 피신고자,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주의사항, 조사시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ㅇ 조례상 “조사의견” 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으로 생각할 소지는 있으나,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제보의 이첩은 제보요건 및 조사권한 있는 기관을 확인하여 조사(감사)하지 아니하고 타 기관으로 보내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조사결과가 존재 하지 않고, “조사의견” 첨부는 타 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규정임 ※ 타 지자체(경기·부산·인천·대구·제주)에 공익제보 이첩시 조사의견 첨부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11. 19. 전화문의) 조사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일반 공문 형태로 송부하고 있음.(자체 제보 시스템 없음) **□ 향후계획** ㅇ 조례상의 “조사의견” 을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공익제보 안건을 자치구 감사담당관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예컨대, ‘공직자 비리 신고’ 관련 공익제보가 접수됐을 때 해당 건을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이송할 경우, 공익제보 내용과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검토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교한 이첩 원칙과 절차를 마련할 것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공익제보자 신분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법령과 권익위에서 안내하는 제보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보 접수 시점에 제보자가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제보 이첩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심사과정** : 접수된 제보의 서울시 심사 과정에서 제보자 신분 공개 동의여부 - **조사기관 이송과정** : 접수된 제보의 타기관 이첩과정에서 제보자 인적사항 동반 이송 동의여부 - **조사기관 조사과정** : 제보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신분공개 동의여부 ㅇ 응답소 시스템상 제보자 인적사항 부분의 비공개처리 가능하며 제보자가 조사기관 이첩과정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보자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여 이첩함. ㅇ 문서 등 형태로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내용을 확인하여 비공개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부분을 직접 삭제 등 처리 후 스캔하여 응답소 시스템에 공익제보 등록하여 처리하므로 제보의 내용 또한 철저히 보호되고 있음. **□ 향후계획** ㅇ 공익제보 관련 법령의 제보자 보호 원칙들을 준수하여 제보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ㅇ 감사 원처분에 대한 재심의 인용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처분에 대한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감사과정 중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 감사단계별 질문서, 문답서, 공감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ㅇ 원처분 전 심의 요청시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 심의의 객관성 확보 □ **향후계획** ㅇ 중요 처분의 경우 원처분 전 사전 심의 강화
ㅇ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의 연령대와 직급에 편차가 크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 직원으로 구성할 필요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 총 13건(완료기준) 중 10건의 신고자 피신고자 연령대는 40~50대이며, 사건 배정 시 조사자의 연령, 직급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배정하고 있음 ※ 조사담당자 연령은 50대 8명, 40대 6명, 30대 4명, 20대 2명 등 총 20명 (2025.1.20.기준)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ㅇ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노동정책과가 아닌, 조사를 실제 수행하는 조사담당관에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업무는 노동정책과가 총괄하며 관련 조례(「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및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ㅇ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예방활동 ▲신고·상담 ▲조사 ▲사후조치 등으로 구성되며, 조례(제8조) 및 매뉴얼에는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직장 내 괴롭힘 업무 효율을 위해 인권담당관과 TF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할 것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현행「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인권담당관(인권보호관)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제20조(설치 및 기능) ③ 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 ㅇ 노동정책과 소관「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가 제정·시행(2023.12.29.)되고 있어, 직장내 괴롭힘 소관부서(노동정책과) 및 인권담당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소관부서에 종합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전달하였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ㅇ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각하 요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 취지에 맞는 기준과 절차로 개선·보완할 필요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상 각하 사유 중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는 ㅇ 주관부서인 노동정책과에서 2024.12.3. 해당 조항을 개정(삭제)하였음(노동정책과-5887/2024.12.3.)
ㅇ 분리조치 개정 시 ‘피해자 분리 조치’를 ‘가해자 분리조치’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주관부서인 노동정책과에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 완료(2024.12.3.) - “분리조치” (매뉴얼 30p) ·(접수·상담 및 조사단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배치전환 등 조치 ※ 괴롭힘 행위가 중대·명백한 경우(물리적인 폭행증거, 성희롱, 성폭력과 병합된 경우, 지속적인 모욕 등)에는 조사단계에서 행위자 분리조치 시행 ·(조사결과 확인 이후) 신고인 및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ㅇ 가해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피해자는 결과 통보도 못 받고 이의신청도 못 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피신고인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등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소청 등이 가능한 반면, ㅇ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등 처벌(수위)에 대해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통보받지 못하였으나 ㅇ「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이 개정됨(2024.9.)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통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2024.12.3. 매뉴얼 반영) ㅇ 피해자가 소속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가 가능함
ㅇ 피조사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강압적인 태도를 느꼈다는 지적이 있음.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 활동 교육 확대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2024 감사위원장 부임 후 “공정·소통의 조사역량 강화 계획”(조사담당관-6521/2024.4.3.)을 수립하여 피조사자 등을 존중하는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1.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조사업무 역량 강화 2. 피조사자 등을 존중하는 조사환경 조성 ㅇ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ㅇ 한강버스 추가 조사에서 최근 제기된 각종 지적사항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감사 결과 나오면 신속히 보고 바람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ㅇ 한강버스 관련 조사실시 - 조사기간 : '24.9.6.(금) ~ 종료시 - 조사대상 : 미래한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 조사내용 : 한강버스 관련 의혹사항 진위여부 확인 등 ※ 한강버스 관련 국회의 감사원 감사요구(행정안전위원회 '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12.26.)에 따라 감사원 감사 진행 중임 **□ 향후계획** ㅇ 감사원 감사결과 모니터링
ㅇ 청계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시공사 간의 다툼으로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관련사항 검토 후 감사해 주기 바람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ㅇ 당사자 긴급 면담실시('24. 11. 19.) ㅇ 건의하신 시의원 보고 후 종결 ('24. 11. 18. / 11. 20) **□ 향후계획** ㅇ 필요시 민원인에게 소송절차 및 관련 법률 안내 실시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ㅇ 반부패 청렴제도 관련하여 부정한 수의계약 악용을 막아야 할 것이며, 청렴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청렴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변경계약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할 계획임 ㅇ 또한, 계약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계약실무 및 청렴교육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임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을 통한 청렴도 제고 계획’(재무과-4001, 2025. 1. 23.)
ㅇ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감사단(165명), 안전감사옴부즈만(20명), 명예하도급호민관(16명) 운영중 **□ 향후계획** ㅇ 25년 자체감사에 공익감사단 적극 활용예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ㅇ 공익감사단의 실적이 저조하며, 활동이 점검에 머무르고 있음. 공익감사단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ㅇ 감(조)사분야 분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예산에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수감 시 법률 자문 지원 예산 12,000천원을 증액 편성 ㅇ '25. 5월 재위촉 예정인바, 분야별 수요 및 개인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 예정임 ㅇ 공익감사단 요청 접수 시 미참여 공익감사단 우선 지원을 통해 참여율 제고 도모 **□ 향후계획** ㅇ 외부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따르면 ‘주요 시책 사항 점검’ 업무는 조사담당관 소관이지만 실제 주요 시책 사항 점검 실적은 최근 3년간 없음. ‘주요시책’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업무분장 재정립을 통해서 조사담당관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ㅇ「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45조 제6항(조사담당관 분장사무) 제5호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은 각종 市 소관 사항에 대해 필요시 점검·조사하는 사안으로 ㅇ 동 조항 제4호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에 포함(중복)되는 사항이며, ㅇ 개별 사안 발생 시「서울시 행정감사 규칙」상 ‘특정감사’,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상 ‘확인·점검’ 등 형태로 실시하는 사항이나 ㅇ「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분장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주요 공약사업 등’에 대한 점검 업무로 오해를 야기하여 동 규칙 조항(주요시책 사항의 점검)을 개정(삭제)할 예정임 **□ 향후계획** ㅇ 2025년 조직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일괄 개정 예정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ㅇ 21년도 감사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이 적절하였는지 자료 제출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자료 제출 완료 ('24. 11. 25.)
ㅇ 투자출연기관 감사사례집 제출 **(공공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자료 제출 완료 ('24. 11. 14.)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감사이원화 정책에 따라 사업 성과 감사에 좀 더 집중했음에도 SH공사 종합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사업들이 누락됐던 이유 **(공공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SH 종합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거생활안정, 주거복지향상 분야 등 주요업무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감사를 추진하였음(목표 대비 실적 점검, 개선안 도출) - 임대주택 매입·공급 및 도시개발 업무 -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업무 -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 등 ※ 감사기간 '24. 3. 18.~4. 29. / 감사성과 총 24건 ○ 당초 SH공사의 한강개발 참여사업 추진현황을 감사사항에 포함하였으나, 감사 시작일 기준 사업 초기단계로, 성과 점검에 필요한 세부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제외하였음 - (한강버스) 운영법인 자본금, 선박 매입 대출비 등에 필요한 비용 총 321억원은 당초 예비비로 계획하였으나, 예산과목을 변경(예비비→투자자산취득비)하는 과정이었고, 운영법인 설립 전 민간기업인 ㈜이크루즈에 의해 선박회사와 선박건조 최초 계약만 체결된 상태였음 ※ 예비비 변경일: '24. 3. 27.(제387회 이사회 의결) ※ 선박건조 최초계약일: '24. 2. 1. ※ 법인 설립일: '24. 6. 27. - (트윈아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성 심의 중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심의요청: '24.2.29.)
○ 공익신고 처리결과 현황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4. 11. 2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ㅇ 공익감사단 분야별 참여, 미참여 인원 현황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자료 제출 완료 ('24. 11. 14.)
ㅇ 공익제보 접수 현황 중 부정청탁 13건 처리 결과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자료 제출 완료 ('24. 11. 22.)
ㅇ 공익감사단의 실적이 저조하며, 활동이 점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 보고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자료 제출 완료 ('24. 11. 25.)
ㅇ 공익감사단이 운영 목적에 따라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법 보고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자료 제출 완료 ('24. 11. 25.)
ㅇ 공익제보 타 기관 이첩 시 첨부한 조사의견서 일체, 각 건별 처리사항 자료 제출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자료 제출 완료 ('24. 11. 20.)
ㅇ 공익제보 관련 민원 처리 결과 설명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자료 제출 완료 ('24. 11. 20.)